

# 대 법 원

## 제 3 부

## 판 결

사 건 2014재다72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재심원고 A  
피고, 재심피고 B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88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우선, ① 원고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토지대장 등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가 "망 F의 차남인 AB가 자신의 아들 AC를 F의 호주상속인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한 사후양자신

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① 그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② 그 원심이 (i) F이 1940. 7. 23. 처 AD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 Z는 그에 앞서 처 AA만 남기고 사망한 사실, (ii) F의 차남 AB는 1940. 8. 20. 자신의 장남 AC가 F을 '전호주 망 F 장남 망 Z 질'로서 호주상속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Z의 사후양자 지정권자가 아닌 AB가 위와 같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입양이나 호주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속에는 원고가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이 위 판단에 이른 이유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G을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피고와 피고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판단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